학생회 선거규정

2011.12.1. 개정
1999.1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임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제3조(피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b(3.0)학점 이상인 자
3. 학칙 위반 및 징계사실이 없는 자
4. 본 대학 재학생의 일정 수(재학생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제5조(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선출시기) 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 실시한다.
제7조(선거비용)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구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정·부학생회장 및 각 학부(과)별 전공 학생회장, 각 반대표로 구성하고, 학생복지 담당 부서 팀장의 지도를 받는다. <개정 2011.12.1.>
제9조(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한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3.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사무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5. 당선자 선포 및 공고
6. 선거에 관한 기타 사무

제10조(의결) 소속위원 1/2이상 참석,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금지사항) ①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학생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자격을 박탈한다.

제3장 후보자등록 및 투표, 개표, 당선공고

제12조(입후보 등록절차) ① 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선거권자(재학생) 2%이상의 추천서 명부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서약서 1부
4.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5. 성적증명서 1부
6. 소견문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투표, 개표 참관인 (2명) 명부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공고한다.

제13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해당입후보자의 결정 공고 직후부터 선거일 전날 24:00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발표회의 일시, 장소, 연설시간 등을 결정하여 개최일 2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입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홍보물의 규격, 매수 및 게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이외의 선거유인물은 사용할 수 없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금지사항) 선거의 순수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하는 행위
2. 입후보자 및 선거권 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등을 유포 하는 행위
3. 입후보 등록필 전에 선거운동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불법유인물 배포 및 게시물 게시행위
5.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비판행위
6. 금품수수 및 음식물 접대행위
7. 선거관리 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학풍을 문란케 하는 행위

제15조(후보자 자격상실) 제14조의 위반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6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다.

③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한다.

④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없거나 규정 이외의 용지를 사용한 경우

2.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무효표 처리의 경우

제18조(당선결정) ① 입후보자가 2개조 이상일 경우 유효투표수가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투표, 투표인원에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입후보자가 단일 입후보 시 유효투표수가 재적인원 1/2이상 투표에 1/2이상 찬성인 경우 당선 결정한다.

③ 당선인이 결정되면 2일 이내에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09.7.1.>

제19조(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1. 각종서류를 허위로 작성한자.
2.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자
3. 제14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자

제20조(이의신청) ① 선거기간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표 후 24시간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2/3참석에 재적위원 2/3찬성으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9.7.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총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총학생회 선거권자 추천명부
【별지 제3호 서식】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소견문
【별지 제5호 서식】총학생회 선거 투개표 참관인 명부
【별지 제6호 서식】총학생회 임원 승인신청서